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3.9.15.(금) 15:00	배포	2023.9.15.(금)	
담당부서	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이진아 (02-3145-8129)
		담당자	조사역	이상선 (02-3145-8121)

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,500만원 지급
 -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금감원(☎1332)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!

I 포상 실시 배경

□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*을 실시하고 있음

*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'16.6월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제도 도입 후, '22년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 7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

□ ①가상자산·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, ②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, ③서민·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및 금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

⇒ '23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을 실시하고, 우수 제보 활성화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

불법 금융행위 수사의뢰 건수

(단위 : 건)

구분	'20년	'21년	'22년
수사의뢰 건수	117	731	495
① 유사수신	58	61	65
② 기타 불법금융*	59	670	430

* 불법 금융투자업, 미등록 대부업, 불법 채권추심 등

II 포상 내용

- (포상식 일시 및 장소) '23. 9. 15.(금) 15:00, 금융감독원*
 - * (주요 참석자) 금융소비자보호처장, 민생금융국장, 우수 제보 포상대상자 등
- (심사대상)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*를 받고,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(경찰 등)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
 - * 투자설명서, 투자계약서,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(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)를 제출
 -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
- (심사항목) 신고 내용의 완성도, 예상 피해규모,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(선정결과)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
 - 우수(55백만원) 6명, 적극(23백만원) 10명, 일반(7백만원) 7명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,000만원 및 총 23명에 8,500만원 지급

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

(단위 : 명, 만원)

구분	등급	우수		적극		일반		합계	
	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	인원수	금액
유사수신		5	5,000	1	500	-	-	6	5,500
기타 불법금융		1	500	9	1,800	7	700	17	3,000
합계		6	5,500	10	2,300	7	700	23	8,500

III 소비자 안내사항

-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·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·제보가 중요하므로
 - 유사수신·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*를 당부드립니다
 - * 금감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☎1332」 및 인터넷 「불법금융신고센터」에서 신고 가능
 - ※ (붙임 1)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
(붙임 2)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·신고 방법 등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1 주요 불법 금융행위 제보사례

◆ 아래의 제보사례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

1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

<p>◆ A업체는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서울, 대전,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코인 투자를 유도</p>	<p>고령층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</p>
<p>○ A업체의 모집책들은 동 업체가 직접 개발한 '◆◆코인'은 이미 ■■■거래소(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)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기반의 유망한 코인이라며 코인 투자를 권유</p>	<p>자체 개발 코인 투자 권유</p>
<p>○ 해당 코인이 급등하는 그래프 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며 투자하자마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며 투자자를 현혹</p>	<p>자전거래를 통한 시세급등 그래프 제공</p>
<p>○ 또한,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하위 6단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</p>	<p>피라미드 형태 다단계 구조</p>
<p>☞ 제보자 B씨는 A업체가 코인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후 투자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코인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법 유사수신이 의심되어 금감원에 제보</p>	<p>금감원에 제보</p>

2 부동산 사업 투자 빙자형

<p>◆ C업체는 오피스텔 건물 등에 투자하는 '부동산 투자개발 전문업체'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집</p>	<p>부동산 투자개발 전문업체라고 소개</p>
<p>○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매월 8%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현혹</p>	<p>담보권 설정으로 원금 보장 약속</p>
<p>○ 또한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오는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3%~10%의 모집수당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모집</p>	<p>피라미드 형태 다단계 구조</p>
<p>○ 실제로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점차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</p>	<p>수당 미지급 및 투자금 편취</p>
<p>☞ 피해자 D씨는 자신의 어머니의 소개로 C업체에 1,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,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불법 유사수신이 의심되어 금감원에 신고</p>	<p>금감원에 피해 신고</p>

3

사업연계형

<p>◆ E업체는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원금 및 200%의 고수익(매일 2%씩 100회 지급)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</p>	<p>고령층 대상 투자 유도</p>
<p>○ 자신들은 가상자산·명품경매·방송광고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원이 충분하고, 자체 개발한 코인 거래를 통해 큰 시세 차익을 내고 있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</p>	<p>자체 개발 코인 투자 권유</p>
<p>○ 투자한 코인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급 명품 편집샵에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</p>	<p>투자한 코인으로 명품 구매 가능하다고 현혹</p>
<p>○ 또한, 투자자를 소개시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한 다면서 자금을 모집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</p>	<p>피라미드 형태 다단계 구조</p>
<p>☞ 피해자 F씨는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E업체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불법 유사수신이 의심되어 금감원에 신고</p>	<p>금감원에 신고</p>

4

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

<p>◆ 불법대부업자 H는 길거리 전단지, SNS 홍보 등을 통해 등록 대부 업체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서민·취약계층 등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을 실행</p>	<p>전단지, SNS 등을 통해 광고하여 대출희망자 유인</p>
<p>○ 피해자 G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의 전단지를 보고 불법 대부업자 H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대출*을 진행함</p> <p>* 2,000만원 대출, 선수수수료 500만원 공제, 한달 후 2,000만원 상환 ☞ 실제 이자율 : 이자(500만원)÷대출원금(2,000만원)÷대출기간(30일)×365일 = 연 304%</p>	<p>불법대부계약을 권유·체결</p>
<p>○ 이 과정에서 불법대부업자 H는 피해자 G의 가족·지인·직장동료 등 10여명의 전화번호를 받아감</p>	<p>폭언 및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</p>
<p>○ 피해자G가 한달 후 2,0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불법대부업자 H는 대출연장비 500만원을 강요하면서 밤낮으로 매일 피해자G 및 가족 등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</p>	<p>금감원에 신고</p>
<p>☞ 피해자 G씨는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하였음에도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당하자 금감원에 신고</p>	<p>금감원에 신고</p>

붙임 2 불법 금융행위 피해 제보·신고 방법 등

1 신고요건

- 유사수신·전기통신금융사기·미등록 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실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*를 첨부하여 신고

*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
-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함을 유의

2 신고방법

가. 인터넷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 또는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

- 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유사수신,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·제보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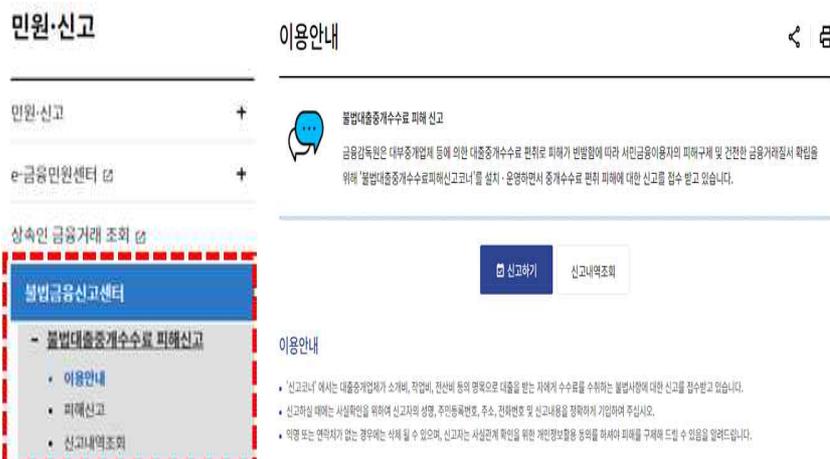
* [유사수신] 투자설명회 자료, 투자계약서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[불법 대부업] 금전차용증서 등 대부계약서 일체, 채권자 인적사항, 녹취록 등
[불법 채권추심] 녹취록, 채권자 인적사항, 채권자 대화내역 등
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
- ②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·제보*

* 혐의자 인적사항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신청 화면

<p>❶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fss.or.kr > 민원·신고)</p>	
<p>❷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</p>	
<p>[유사수신·불법대부업 제보]</p> <p>❸ "다음" 클릭</p> <p>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본인인증후 "다음 단계" 클릭</p> <p>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"등록" 클릭</p>	
<p>[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]</p> <p>❸ "신고하기" 클릭</p> <p>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본인인증후 "다음 단계" 클릭</p> <p>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"등록" 클릭</p>	

나. 유선신고

☐ 금융감독원 공식 전화번호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